

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교통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가슴기살균제 사건처럼 독성물질에 의한 사회적 재난은 발생 시 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대한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- 이에 동 개정안은 시장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,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책무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며, 중독사고 발생 시 의료정보뿐만 아니라 피해구제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- 또한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서울시독성물질 중독관리 센터 운영의 수탁기관으로 추가하여 독성물질의

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